완도군의회 공고 제2026 - 11호

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

「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지방자치법」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6년 2월 27일

완 도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안
2. 발 의 자 : 조영식 의원 외8
3. 제정이유

○ 상위법령인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완도군의회 소관 규칙 2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**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(안 제1조)**

- 제12조 중 급수별로 달리 정하던 응시연령(7급 이상 20세, 8급 이하 18세)을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개정에 따라 18세 이상으로 일원화함

○ **완도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(안 제2조)**

- 제1조 중「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 인용 조문을 제6조에서 제7조로 수정함

5. 관련법령 : 지방공무원 임용령, 지방자치법

6. 조례안예고기간 : 2026. 2. 27. ~ 2026. 3. 6.(초일불산입 5일간)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사운영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
(전화: 061-550-5913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・전화・팩스・직접방문 등

8. 기타

○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사운영팀(전화: 061-550-591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1부.
끝.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	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 소			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		

「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

완도군의회의장 귀하

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

제1조(「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의 개정)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”을 “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”으로, “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해야”를 “18세 이상이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조(「완도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」의 개정) 완도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조례 제6조"를 "조례 제7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제1조 「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응시연령)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해야 한다. 1. 7급 이상 : 20세 이상 2. 8급 이하 : 18세 이상	제12조(응시연령)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 18세 이상이어야 -------- --------. <삭 제> <삭 제>

제2조 「완도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」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완도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(이하조례"라 한다.)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	제1조(목적)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제7조 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
참고 **관계 법령 발췌**

지방공무원 임용령

제4조(시행규칙) 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(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하며, 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7. 28., 2021. 11. 30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. <개정 2021. 11. 30.>

[전문개정 2009. 2. 6.]

제37조(응시연령)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지방자치법

제29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